

## 화물유통촉진법 / 시행령 / 시행규칙

I. 화물유통촉진법	II.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	III.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
<p><b>第3章 複合運送周旋業</b></p> <p><b>第8條</b> (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) ① 複合運送周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 船舶 또는 航空機만을 이용하는 運送周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도 또한 같다. &lt;改正 95·12·29 法5110, 99·2·5&gt;       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한 者(이하 "複合運送周旋業者"라 한다)가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(新設 95·12·29 法5110)       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資本金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登錄基準을 갖추어야 한다.&lt;改正 2000·1·28&gt;</p>	<p><b>제11조</b> (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)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.          [전문개정 2000·7·27]</p> <p><b>제12조</b> 삭제 &lt;2000·7·27&gt;</p>	<p><b>제2장 복합운송주선업</b></p> <p><b>제3조</b> (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)         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&lt;개정 96·7·27, 99·2·9&gt;   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&lt;개정 96·7·27, 99·2·9&gt;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2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</li> <li>3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</li> <li>4.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)</li> </ol> <p><b>제4조</b> (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)          ① 시·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 유무와 당해 신청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&lt;개정 96·7·27, 99·2·9&gt;         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복합운송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&lt;신설 99·2·9&gt;</p> <p><b>제5조</b> (복합운송주선업의 변경등록)          ① 복합운송 주선업자가 법 제8조제2</p> </p>

## 자 · 료 I

<p><b>第9條 削除 &lt;95·12·29 法5110&gt;</b></p> <p><b>第10條 (登録의 缺格事由)</b> ①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. &lt;改正 93·3·10, 99·2·5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禁治產者 · 限定治產者 또는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</li> <li>2. 이 法,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, 鐵道小運送業法, 航空法 또는 海運法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</li> <li>3.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</li> <li>4. 法人으로서 그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을 경우</li> </ol> <p>②削除 &lt;2000·1·28&gt;</p> <p><b>第11條 内지 第13條 削除 &lt;95·12·29 法5110&gt;</b></p> <p><b>第14條 内지 第17條 削除 &lt;99·2·5&gt;</b></p> <p><b>第18條 (사업의 承繼)</b> ①複合運送周旋業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の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 · 相續人 또는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합병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 · 義務를 承繼한다.</p>	<p>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변경 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·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&lt;개정 96·7·27, 99·2·9&gt;</p> <p>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"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"라 함은 법인의 임원(대표이사를 제외한다)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.&lt;개정 96·7·27, 99·2·9&gt;</p> <p><b>제6조(등록의 이관)</b> 시 · 도지사는 복합운송주선 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·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99·2·9]</p> <p><b>제7조 内지 제9조 삭제 &lt;99·5·29&gt;</b></p> <p><b>제10조 (사업승계의 신고)</b> ①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양도 · 양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양도 · 양수신고서를, 상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속신고서를,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</p>
---	--

<p>②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·義務를 承繼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&lt;改正 95·12·29 法5110&gt;</p> <p>③第10條의 规定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承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.</p> <p>이 경우 相續人이 第1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日부터 3月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할 수 있다.</p> <p>第19條 (사업의 休止·廢止) ①複合運送周旋業者는 複合運送周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廉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&lt;改正 95·12·29 法5110&gt;</p>		<p>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법인 합병신고서를 그 권리·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&lt;개정 96·7·27, 99·2·9&gt;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&lt;개정 96·7·27, 99·2·9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의 양도·양수신고의 경우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양도·양수계약서의 사본</li> <li>나. 법인등기부등본(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</li> <li>다. 양수인(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</li> <li>라.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양수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)</li> </ol> </li> <li>2. 사업의 상속신고의 경우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나. 신고인과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</li> <li>다.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라.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</li> </ol> </li> <li>3.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합병계약서의 사본</li> <li>나.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</li> <li>다.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</li> <li>라. 합병후 존속하거나 협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</li> <li>마.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/ol> </li> </ol> <p>제11조 (사업의 휴지·폐지등 신고)        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휴지·폐지신고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</p>
--	--	---

<p>· 29 法5110&gt;</p> <p>②複合運送周旋業者인 法人이 合併의 사유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그清算人(解散이 破産에 의한 경우에는破産管財人을 말한다)은 지체없이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&lt;改正 95·12·29 法5110&gt;</p> <p>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期间은 6月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④複合運送周旋業者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疾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一般公衆이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<b>第20條 (登録의 取消 등)</b>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復合運送周旋業者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第1號·第1號의2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. &lt;改正 95·12·29 法5110, 2000·1·28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</li> <li>1의2. 第10條 각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</li> <li>2.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</li> <li>3.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</li> <li>4.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</li> </ul> <p>②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相續을 개시한 날 또는 第10條第4號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月은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&lt;新設 2000·1·28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事業者の 지위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10條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</li> <li>2. 法人이 第10條第4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</li> </ul> <p>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. &lt;改正 95·12·29 法5110, 99·2·5&gt;</p> <p><b>第21條 (複合運送周旋業協會)</b> ①複合運送周旋業者は 複合運送周旋業의 전전한 발전과 複合運送周旋業者の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人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協會(이하 "複合運送周旋業協會"라 한다)를 設立할 수 있다.</p>		<p>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휴지·폐지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지·폐지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&lt;개정 96·7·27, 99·2·9&gt;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2.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/ol> <p><b>제13조 (협회의 설립)</b> ①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자는 법 제21조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.)를 전국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. &lt;개정 96·6·29, 2000·7</p>
---	--	--

# 자 · 료 I

<p>&lt;改正 95·12·29 法5110&gt;</p> <p>②複合運送周旋業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协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 5分의 1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당해 协會의 會員이 될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1이상이 출석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.</p> <p>&lt;改正 95·12·29 法5110, 99·2·5&gt;</p> <p>③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를 받아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.</p> <p>&lt;改正 95·12·29 法5110&gt;</p> <p>④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法人으로 한다. &lt;改正 95·12·29 法5110&gt;</p> <p>⑤複合運送周旋業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.</p> <p>&lt;改正 95·12·29 法5110&gt;</p> <p>⑥複合運送周旋業協會의 業務 및 定款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>&lt;改正 95·12·29 法5100&gt;</p> <p>第22條 (資金의 지원) 政府는 複合運送周旋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複合運送周旋業者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所要資金의 融資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• 27&gt;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&lt;개정 94·12·23 대령 14447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정 관</li> <li>2.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</li> <li>3. 회원의 명부</li> <li>4.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</li> <li>5. 창립총회 회의록</li> </ol> <p><b>제14조 (정관)</b>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목 적</li> <li>2. 명 칭</li> <li>3. 사무소의 소재지</li> <li>4.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임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업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9. 해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10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<b>제15조 (업무)</b>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.</p> <p>&lt;개정 96·6·29, 2000·7·27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</li> <li>2.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의 진흥·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·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사업</li> <li>3.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</li> <li>4. 복합운송주선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</li> <li>5.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</li> </ol>
---	---

# 자 · 료 I

제9章 補 則		제7장 보 칙
<p>第49條 (權限의 委任 및 委託) ①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 라 市·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複合 運送周旋業協會등 物流와 관련된 機 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. &lt;改 正 97·12·13 法5454, 99·2·5, 2000 ·1·28&gt;</p> <p>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를 수행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를 公務員으로 본다. &lt;改正 99·2· 5, 2000·1·28&gt;</p> <p>[全文改正 99·12·29 法5110]</p>	<p>제16조 (권한의 위임) ①건설교통부 장관은 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&lt;개정 93·7·26, 94·12 ·23 대령14447, 96·6·29, 96·8· 8, 97·12·31, 98·12·31, 99·5· 10, 2000·7·27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</li> <li>1의2.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복합운송 주선업의승계신 고의 수리</li> <li>1의3.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복 합운송주선업의 휴지·폐지 신고의 수리</li> <li>1의 4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복 합운송주선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</li> <li>2.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</li> <li>3. 삭제 &lt;96·6·29&gt;</li> <li>4.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사시행인 가·변경인가,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행정 기관 의 장과의 협의, 동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의 고시</li> <li>5. 삭제 &lt;99·5·10&gt;</li> <li>6. 내지 8. 삭제 &lt;96·6·29&gt;</li> <li>9. 삭제 &lt;99·5·10&gt;</li> <li>10. 삭제 &lt;96·6·29&gt;</li> <li>11.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 화물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등 록취소 및 사업정지</li> <li>12.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 합화물터미널 사업자에게 준용 되는 사업승계의 신고수리, 사 업의 휴지·폐지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와 시·도단위의 협회 설립인가</li> <li>13. 삭제 &lt;2000·7·27&gt;</li> <li>14. 삭제 &lt;99·5·10&gt;</li> <li>15. 및 16. 삭제 &lt;96·6·29&gt;</li> <li>17. 및 18. 삭제 &lt;2000·7·27&gt;</li> <li>19.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 운송주선업자 및 복합화물터미 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</li> <li>20. 법 제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</li> <li>21.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</li> </ol>	<p>제37조 (행정처분의 기준) 법 제20 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</p> <p>&lt;개정 2000·8·8&gt;</p>

# 자 · 료 I

<p><b>第50條</b> (登録證貸與 등의 금지) 이 법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 또는 資格 을 취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 게 하거나 그 登錄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. &lt;改正 95 · 12 · 29 法 5110, 99 · 2 · 5&gt;</p> <p><b>第51條</b> (過徵金) ①建設交通部長官 은 複合運送 周旋業者 또는 複合貨物 터미널事業者가 第20條 또는 第35條 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停止處分에 갈 음하여 1千萬원이하의 過徵金을 賦課 할 수 있다. &lt;改正 95 · 12 · 29 法 5110, 99 · 2 · 5, 2000 · 1 · 28&gt;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 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 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建設 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 에 따라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 여 徵收한다. 다만, 第20條 또는 第35 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이 第49條의 規定에 따라 市 · 道 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市 · 道知 事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 하는바에 따라 地方稅滯納處分의 예 에 의하여 徵收한다. &lt;改正 95 · 12 · 29 法 5110, 97 · 12 · 13 法 5454, 99 · 2 · 5, 2000 · 1 · 28&gt;</p>	<p>복합운송주 선업자 및 복합화 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 과 및 징수 ②시 ·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임 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, 제 1호의2 내지 제1호의4, 제2호 · 제4호 (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에 한 한다) · 제11호 · 제12호(사업의 승계 · 휴지 · 폐지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 리와 협회설립의 인가에 한한다) · 제 19호 ·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 여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&lt;개 정 98 · 12 · 31, 99 · 5 · 10, 2000 · 7 · 27&gt;</p> <p><b>제17조</b> 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 와 과징금의금액등) ①법 제5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 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은 별표 3과 같다. &lt;개정 96 · 6 · 29&gt;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 모, 사업 지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, 기타 특별한 사유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 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 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 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. &lt;개정 94 · 12 · 23 대령14447, 98 · 12 · 31&gt;</p> <p><b>제18조</b> 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건설교통부 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 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· 확인한 후 위반 사 실 · 이의방법 · 이의기간등을 서면으 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&lt;개정 94 · 12 · 23 대령14447&gt;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 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 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 ·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</p>
---	---

## 자 · 료 I

	<p>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&lt;개정 94·12·23 대령14447&gt;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&lt;개정 94·12·23 대령14447&gt;</p> <p>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</p> <p><b>제19조 (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)</b> ① 건설교통부 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. &lt;개정 94·12·23 대령 14447&gt;</p> <p>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/p> <p>&lt;개정 94·12·23 대령14447&gt;</p> <p><b>제20조 삭제 &lt;97·12·31&gt;</b></p> <p><b>제21조 (과태료의 부과·징수)</b>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&lt;개정 94·12·23 대령14447&gt;</p> <p>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 &lt;개정 94·12·23 대령14447&gt;</p> <p>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. 다만, 건설교</p>
--	--

<p>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.</p> <p>&lt;개정 94·12·23 대령14447, 96·6·29&gt;</p> <p>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&lt;개정 94·12·23 대령14447&gt;</p>	
<p><b>第52條 (청문)</b>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&lt;改正 2000·1·28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</li> <li>2.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</li> <li>3. 削除 &lt;2000·1·28&gt;</li> <li>4. 第48條의16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의 取消</li> </ol> <p>[全文改正 97·12·13 法5453]</p>	
<p><b>第53條 (手數料)</b>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登錄을 申請하는 경우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. &lt;改正 95·12·29 法5110&gt;</p>	<p><b>제38조 (수수료)</b>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. &lt;개정 96·7·27&gt;</p>
<p><b>第54條 (적용제외)</b> ①削除 &lt;2000·12·29&gt;</p> <p>②관세법 제183조의 規定에 의한 保稅倉庫에 대하여는 第5章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&lt;改正 96·8·14, 2000·12·29&gt;</p> <p>[全文改正 95·12·29 法5110]</p>	<p><b>제39조 (과태료의 징수절차)</b>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한다.</p>
<p><b>第10章 罰則</b></p> <p><b>第54條의2 (罰則)</b> ①第48條의7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에 의한 電子文書를 偽作 또는 變作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偽作 또는 變作된 電子文書를 행사하는 者는 10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</p> <p>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.</p> <p>[本條新設 95·12·29 法5110]</p> <p><b>第54條의3 (별첨)</b> 第48條의7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에 의</p>	

하여 처리·보관 또는 傳送되는 物流情報 를 훼손하거나 그 秘密을 침해·盜用 또는 누설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[本條新設 95·12·29 法5110]

**第54條의4 (罰則)** 第48條의7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의 保護措置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[本條新設 95·12·29 法5110]

**第55條 (罰則)**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 <改正 95·12·29 法5110, 2000·1·28>

1.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複合運送周旋業을 경영한 者
2.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을 경영하는 者
3. 第48條의7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 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者

**第55條2 (罰則)** 第48條의8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 를 공개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

[本條新設 95·12·29 法5110]

**第56條 (罰則)**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 <改正 99·2·5>

1.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者
2.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者
3.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工事を 施行한 者
4. 및 5. 削除 <99·2·5>
6.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姓名 또는 商號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登錄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한 者

[全文改正 95·12·29 法5110]

第57條 (兩罰規定)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·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5條 또는 第5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.

第58條 (過怠料)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 <改正95·12·29 法5110, 99·2·5, 2000·1·28>

1. 第3조제4項의 규정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

2. 第18條(第3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第19條(第3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

3. 削除 <99·2·5>

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(第49條의 規定에 따라 權限이委任 또는 委託된 경우에는 市·道知事)를 말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이賦課·徵收한다. <改正 95·12·29 法5110, 97·12·13 法5454, 99·2·5>

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. <改正 95·12·29 法5110>

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. <改正95·12·29 法5110>

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00·7·27>  
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(제11조관련)

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	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3억원이상, 개인 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이상일 것
보증보험 가입	<p>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,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</li> <li>2.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</li> <li>3.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자금보증을 받은 경우</li> <li>4.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</li> </ol>